

제8조(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)

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가. 계약 기간

-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.

나. 계약 목적

-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(기관)와 서비스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
다. 본인부담금

-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.

(1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.

(2)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%, 60%경감한다.

라.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.

(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예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.)

마.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.

구 분		금 액(원)	구 분	금 액(원)
월 한도액	1등급	2,069,900	4등급	1,341,800
	2등급	1,869,600	5등급	1,151,600
	3등급	1,455,800	인지 지원 등급	643,700
구 분		금 액(원)	구 분	금 액(원)
방문 요양 (방문 당)	30분 이상	16,630	150분 이상	48,250
	60분 이상	24,120	180분 이상	54,320
	90분 이상	32,510	210분 이상	60,530
	120분 이상	41,380	240분 이상	66,770
구 분		금 액(원)	구 분	금 액(원)
방문 목욕 (방문 당)	목욕차량(차량)이용	84,670	목욕차량 미 이용	47,670
	목욕차량(가정)이용	76,340		

바. 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

(1) 권리

- 가)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나)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 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- 다)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
- 라)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마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

(2) 의무

- 가)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
- 나)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
- 다)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라)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
-
- 마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
- (3) 계약의 해제
-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.
- 가) 대상자의 생명이 위급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나)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 - 다) 0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 - 라)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
 - 마)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사. 이용료 등 수납
-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월 이용료는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납 또는 카드 결재를 한다.
- 아. 이용료 등 발생한 비용 반환
- 서비스 제공 일자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되어 반환금이 발생되지 않는다.
-